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외국인투자 범위 명시 및
외국인 범위에 간접지배 받는 국내법인 추가〉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4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외국인·외국인투자 범위 명시 및 외국인 범위에 간접지배받는 국 내법인 추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9.
3. 회 부 일 : 2025. 6.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외국인·외국인투자 범위 명시 및 외국인 범위에 간접지배받는 국내법인 추가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위임된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을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11조의4).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의한----- ----- ----- ----- -----.
<신 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
<신 설>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③ ~ ⑫ (생략) 법률 제20694호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설></u>	<u>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법인</u> ② -----<u>외국인에</u>----- ----- ----- -----. ③ ~ ⑫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69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4(해외인수·합병등의 범위) <u>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대소유자가 되면서 보유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u>
---	--

	<u>혈족, 4촌 이내의 인척</u> <u>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u> <u>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u> <u>2.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u> <u>3.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u>
--	---

현행법 제11조의2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²⁾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미

1) 2025. 1. 21. 개정, 2025. 7. 22. 시행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표 2]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 위임 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입방식으로 해당 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에서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등으로 규정하면서, 동조 제1항에서는 사전승인의 대상이 되는 해외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외국인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지분 등을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증가 추세 및 인수·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외국 국적의 개인, 외국법인 등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법인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 의해 기술유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외국인이 주요 의사결정, 업무집행 또는 대표·임원 인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등(이하 “간접지배회사”)의 지분도 포함하여 외국인이 주식 등을 50%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의 인수·합병등으로써 사전신고를 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외국인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주식등을 50% 이상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간접지배회사가 단독으로 주식등을 5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인수·합병등으로 보아 사전신고의무가 부과되는지 법문언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 범위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의

내용을 신설하여 기존의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법인도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간접지배 받는 국내법인 역시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단독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의 인수·합병 등으로서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표 3] 개정안 및 현행 시행령상 외국인·외국인투자 범위 비교

개정안	시행령	비교
제11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2항	-
제1호	제1호	동일(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
제2호	제2호	동일(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호	제3호~제5호	유사(※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행과 같은 내용일 것으로 예상)
제4호	-	신설(간접지배: 기존 외국인(제1호~제3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
제11조의4	제18조의3제1항	-
제1호	제1호	동일
제2호	제2호	"
제3호	제3호	"

이에 따라 기존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도 외국인에 포함되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에 대한 인수·합병시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이 명확해지고,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의 범위가 사전신고 의무 범위 및 미신고 등

에 따른 벌칙 범위³⁾⁴⁾를 결정하므로, 시행령에 위임하기보다 개정안과 같이 이를 법률에 최대한 구체적·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간접지배를 받는 국내법인 등을 명시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 따른 ‘외국인’ 용어는 법률상 정의된 것이지만 일상생활상 표현이나 타법상 내국·외국 구분과 일치하지 않아 실제 실무 적용 시 혼선이 우려되므로 별도로 개념을 분리·명시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법인세법」은 과세주체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생략)

③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누어 구분하고 있고⁵⁾,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 소유하는 것으로 금지하면서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의제법인’으로 별도 분류하되 이들에 대해서도 기간사업통신사업자의 주식 초과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⁶⁾,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사원·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등’으로 용어를 정의⁷⁾하여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8), 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9) 제도

5)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증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③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를 규율하고 있음.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및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외국인투자 제한범위에 간접지배를 추가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2건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외국인 정의나 용어를 수정하기보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 외국인투자 범위에 간접지배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다른 투자기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만 제한하려는 개정안⁹⁾, 투자기업 외에 신탁·조합등의 투자집합기구를 통해 간접지배하는 경우도 제한하려는 개정안¹⁰⁾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9) 의안번호 제221037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2025. 5. 2. 발의

10) 의안번호 제221202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2025. 8. 6. 발의

이와 비교할 때 동 개정안은 기존 외국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제4호)을 통해 간접지배하는 경우를 규율하고자 하는데, 이때 법인은 기업 중 법인격을 설립한 경우, 또는 투자집합기구¹¹⁾ 중 SPC등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각각 해당할 수 있어 세 개정안은 서로 규율하고자 하는 간접지배 범위가 상이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경과를 고려하여 동 법률과 타 법률상 간접지배 방식 및 범위가 정합성있게 규정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과 같이 외국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규정하는 것에는 동의¹²⁾하나 외국인투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7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신탁, 사모펀드, SPC 등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

12) 그리고 외국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단체도 외국인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